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024. 6. 20(목) 10:00

제250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안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소관)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548호
- 나. 제 출 자 : 고성미 의원
- 다. 제출일자 : 2024. 5. 28.
- 라. 회부일자 : 2024. 5. 28.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금천구 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활성화하고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의 적극적·자발적인 협조를 조성하는
한편 위기가구 발굴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안 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다. 위기가구 발견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라. 포상금 지급 근거 조항을 마련함(안 제5조~안 제7조).
- 마. 위기가구 발굴 홍보, 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안 제9조).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3조, 「사회보장기본법」
-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예산조치
- 다. 입법예고 : 2024. 5. 29. ~ 2024. 6. 5.

5. 검토의견

가. 제정 이유

본 조례안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기 위한 민간협력과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의원 발의되었으며 총 10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나. 주요 내용

1)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위기가구”를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사회 고립 등으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로 규정함.
-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구청장이 민간인력을 활용하여 위기가구 등 사회적 위험 증가에 선제적·효율적 대응을 위해 구축하는 인적안전망으로써,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복지위기가구를 발굴 및 지원하는 무보수 명예직 지역주민으로 규정함.

2) 위기가구 발견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사회보장급여법」 제9조의2에 따라 위기가구 발견 시 신고 사항을 규정함
 -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
 - 질병, 장애 등 건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 가구 구성원의 자살, 사고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 그 밖에 건강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의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3) 신고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 조항을 마련함(안 제5조 ~ 안 제7조).

- 위기가구 발굴을 장려하기 위하여 개인 및 단체·시설 등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함.

○ 서울시 자치구 현황

건당 3만원,
동일인 최대 30만원

· 강서구(예산액 150만원), 구로구(예산액 300만원), 도봉구(예산액 150만원), 중랑구(예산액 150만원)

건당 5만원,
동일인 최대 30만원

· 용산구(예산액 100만원), 성동구(예산액 65만원), 동대문구(예산액 300만원), 마포구(예산액 100만원, 은누리상품권 지급), 강동구(예산액 250만원)

건당 10만원

· 관악구(예산액 100만원, 동일인 최대 30만원), 중구(예산액 100만원, 건당 동일인 최대 한도액 없음), 강남구(예산액 200만원)

※ 조례 제정 했으나 포상금 계획 미수립 자치구 : 동작구, 은평구, 강북구, 노원구, 종로구

다. 점토의견

-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을 위한 기초 안전망 체계를 강화하는 법령이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최근 경제적 위기 등 갑작스러운 생활환경변화로 인한 안타까운 사건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본 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위기가구의 발굴), 제13조(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의무), 제14조(민관협력) 규정에 따라 복지사각지대 및 위기가구 발굴을 장려하고 보상책 마련으로 구민과 지역공동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범위에서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포상금 지급을 통한 위기가구 발굴이 새로운 방안으로 도입되므로 신고를 위한 절차 안내 등 주민 홍보를 통하여 포상금 지급이 실효성 있도록 해당 부서의 노력이 요구된다 사료됨.

관계법령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약칭: 사회보장급여법)

[시행 2024. 2. 17.] [법률 제19650호, 2023. 8. 16., 일부개정]

제9조의2(위기가구의 발굴) ① 보장기관의 장은 누락된 지원대상자가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가구(이하 이 조에서 “위기가구”라 한다)를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7.>

1.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에게 공유받은 정보와 제12조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결과 보장기관의 장이 위기상황에 처하여 있다고 판단한 사람의 가구
2. 자살자가 발생한 가구 또는 자살시도자가 발생한 가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

② 보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발굴한 위기가구의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3조(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의무) ① 누구든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장기관에 알려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제1항과 같은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중대한 정신적·신체적 장애를 입을 위기에 처한 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보장기관에 알리고, 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8., 2015. 12. 29., 2016. 5. 29., 2018. 12. 11., 2019. 12. 3., 2021. 1. 12., 2023. 6. 13.>

1.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및 제35조의2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3. 「의료법」 제2조 및 제3조의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
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의 의료기사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응급구조사
6. 「소방기본법」 제34조에 따른 구조대 및 구급대의 대원
7.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8.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

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11.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12.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등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
 1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1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5.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지원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1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7.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9. 「지역보건법」 제11조제1항제5호사목에 따른 보건소의 방문간호 업무 종사자
 20.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1.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
 2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
 2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자살예방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4. 「전기사업법」, 「수도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검침 및 안전점검 관련 업무 종사자
 25.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료의 납부·징수나 연금·보험급여의 지급 등과 관련한 민원 또는 상담 업무에 종사하는 자
- 제14조(민관협력)** ① 보장기관과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은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가 이

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원대상자의 발굴 및 지역사회보호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제40조에 따른 시·도사회보장위원회를 말한다)에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 및 그 밖에 사각지대 발굴과 관련한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 등을 포함시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③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 내 지원대상자를 발굴하는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시·군·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자문한다.

1.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시·군·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시·군·구의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40조제4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 3. 21.>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제7항에 따른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공동위원장이 있는 경우에는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된 공동위원장을 말한다)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

- ⑤ 보장기관의 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군·구의 조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한다. <개정 2017. 3. 21.>
- ⑦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 단위로 읍·면·동의 사회보장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해당 읍·면·동에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신설 2017. 3. 21.>
- ⑧ 제7항에 따른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별자치시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7. 3. 21.>

사회보장기본법

[시행 2021. 12. 9.] [법률 제18215호, 2021. 6. 8., 일부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6. 8.>

1.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2.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3. “공공부조”(公共扶助)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5. “평생사회안전망”이란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

6.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법인이 법령에 따라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보로서 사회보장 정책 수행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